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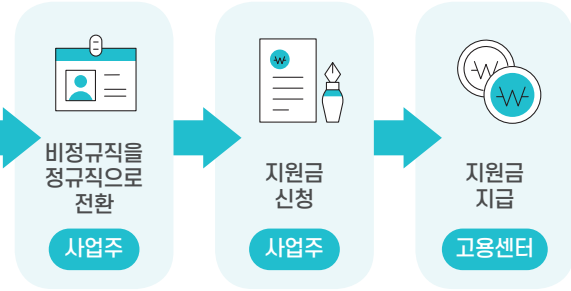
STEP

1

신청방법

관할 지방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
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※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
국번없이 ☎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
기업지원과(팀)에 문의



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

STEP 3

- 1 (공통 서류) 사업 참여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심사우대 입증서류 (해당 자에 한함)
- 2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,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승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



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



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

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

전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?

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
*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



START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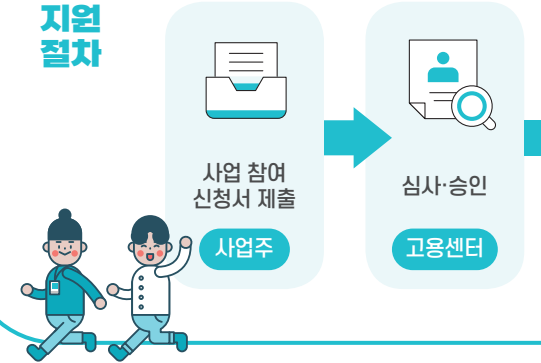
정규직 전환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

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



STEP 2

지원 절차



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

- 1 (공통서류)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전환 전·후 근로계약서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*
- 정규직 전환(또는 직접고용)으로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(또는 직접고용) 전후 각 대상별 임금 (보수)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- 2 근로 형태별 지원요건 검토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



STEP 4

정규직 전환 지원 누구를 지원하나요?



기간제근로자 등을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*로 전환함으로써
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를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*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
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



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지원대상 사업주



- ◆ 비정규직(기간제·파견근로자, 사내하도급근로자, 노무제공자)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
- *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(장)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**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,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

지원요건



- ◆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(사용)한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(장)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
지원제외 사업주



- ◆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다른 기관
- 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 등 (‘가’목), 교육청 등 교육 행정기관 (‘나’목), 국회, 감사원 등(‘다’목)



- ◆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◆ 일반유희·무도유희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타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◆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◆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◆ 해당 사업(장)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

지원제외 근로자



- ◆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◆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◆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- ◆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지원금액



- ◆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일부와 장려금 지원

월평균 임금 증가분	지원수준
20만원 미만	월 정액 40만원 지원 (장려금 40만원)
20만원 이상	월 정액 60만원 지원 (임금증가분 전액 20만원+ 장려금 40만원)

지원기간



- ◆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
→ 지급

지원인원 한도



- ◆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%(소수점 이하 버림,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)
- ※ 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한도 제한 없음